



뉴욕 시에서는 이전 임금이 다음 임금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직업 구직자를 위한 안내 자료:

구직자의 임금 내역 질의 금지

2017년 10월 31일부터 뉴욕 시 고용주는 고용 과정에서 귀하의 임금 내역에 관해 묻거나 이를 참고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은 여성과 유색인종 대한 임금 불평등의 악순환을 저지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자격을 바탕으로 보상을 설정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보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 뉴욕 시에서 신규 고용 대상인 대부분 구직자는 해당 직위가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인턴십이든 관계없이 보호받습니다. 직원이 없는 독립 계약자도 보호받습니다.

Q. 비보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 본 법률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직장에서 내부 보직 변경 또는 승진을 원하는 구직자.
- 단체 교섭 협약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공 부문 구직자. 그러나, 시 기관은 2016년 11월 4일 서명된 시장의 행정 명령 21에 따라 구직자의 임금 내역에 관해 묻거나 이를 참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Q. 어떤 행위가 금지됩니까?

A.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구직 이력서에 현재 또는 이전의 임금 또는 혜택에 관해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현재 혹은 이전 고용주 또는 직원에게 구직자의 현재 또는 이전 임금 또는 혜택에 관해 질문하는 행위.
- 현재 또는 이전 임금이나 혜택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공공 기록에서 확인하는 행위.
- 보상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또는 이전 임금이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는 행위.

Q. 금지되지 않은 행위는 무엇입니까?

A.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위에 대한 예상 임금, 임금 범위, 보너스 및 혜택에 관한 발언을 하는 행위.
- 임금, 혜택, 보너스 또는 수수료 구조에 대한 기대 또는 요건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
- 수익, 창출되는 이익, 판매, 생산 보고서 또는 사업 자료와 같은 현재 또는 이전 직장에서의 업무 생산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관해 질문 하는 행위.
- 근로 이력, 책임 또는 성취 내용과 같은 임금 외 정보 확인을 위해 구직자의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행위.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재 또는 이전 임금 또는 혜택을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고용주는 임금 또는 혜택 결정 시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없습니다.
- 연방, 주 또는 지방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현재 또는 이전 임금이나 혜택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
- 인터뷰 절차 동안 구직자가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또는 이전 임금이나 혜택을 확인하고 고려하는 행위.

Q. 위반이 적발된 고용주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A. 손해배상, 벌금 납부 및/또는 의무 훈련 및 게시 요건과 같은 추가적인 적극적 완화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내역에 관한 차별을 받으신 경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11번으로 전화해 뉴욕 시 인권위원회에 연락하거나 인권위원회 인포라인에 (718) 722-3131번으로 직접 전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NYC.gov/HumanRights를 참고하십시오.

#SalaryIsHistoryNYC